

Human Information

: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

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,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·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. 이 시리즈는 '산업안전보건법 제·개정사'(2015, 고용노동부)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.

정리 대외홍보팀

산업안전보건법의 제·개정 요지(8)





2.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(제27차~28차)

제27차 개정<법률 제10305호, 2010. 5. 20.>

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
[2010. 5. 20, 법률 제10305호]

[본문 생략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단서 중 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

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”을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,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”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제28차 개정<법률 제10339호, 2010. 6. 4.>

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중 부명 변경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
[2010. 6. 4, 법률 제10339호]

[본문 생략]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, 제8조제1항·제2항 전단, 제9조제1

항부터 제4항까지, 제9조의2제1항, 제10조제2항

본문, 제12조 후단, 제15조제3항·제4항, 제15조

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·제4항, 제30조

제1항·제2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4항, 제32조제1

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3조제1항, 제34조제1항 전

단·제2항 본문·제3항제2호·제4항 전단 및 후

단·제5항 전단, 제3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

분,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·제2

항, 제34조의4제1항제2호·제2항, 제35조제1항

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

의 부분, 제35조의3, 제35조의4제1항제3호·제2항, 제36조 제1항 본문, 제36조의2제1항 전단·제3항·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7조제2항·제3항, 제38조제1항 전단·제4항·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·제3항·제4항 전단 및 후단, 제38조의4제1항 본문·제3항·제4항, 제38조의5제1항,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·제3항·제4항,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·제5항·제7항, 제42조제1항 전단·제4항·제5항 전단·제8항 전단 및 후단·제9항 전단, 제42조의2제1항, 제43조제1항 전단·제2항·제4항·제9항 전단 및 후단·제10항 전단·제11항, 제43조의2제1항·제3항 전단, 제44조제1항, 제47조제2항, 제48조제1항·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9조제1항, 제49조의2제1항·제3항·제4항·제7항·제8항, 제50조제1항·제2항,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·제6항 전단 및 후단·제7항·제8항,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2항, 제52조제1항, 제52조의3제1항·제3항, 제52조의4제4항, 제52조의5 각



호 외의 부분,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61조의2제1항, 제61조의3제3호, 제62조제1항 후단·제2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4항, 제63조 단서,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4조제1항 단서, 제65조제1항·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66조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6호·제7호·제5항제5호·제11호·제6항 중 “노동부장관”을 각각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 한다. 제2조제7호, 제9조의2제2항, 제10조제1항·제2항 본문, 제11조제2항제6호, 제12조 전단, 제13조제1항제9호, 제15조제5항, 제20조제3항, 제23조제4항, 제24조제2항, 제25조, 제26조제4항, 제28조제2항, 제29조



제1항제4호 · 제2항 · 제3항 · 제7항, 제29조의2제6항, 제30조제3항 후단 · 제4항,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2조 제2항 · 제3항, 제33조제2항, 제34조 제2항 단서 ·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· 제5항 후단 · 제6항, 제34조의2제1항, 제34조의3제2항, 제34조의4제2항, 제35조제1항제3호 · 제3항, 제35조의2제1항, 제35조의4제2항, 제36조제1항 단서 · 제4항 전단, 제36조의2제2항제1호 · 제2호 · 제6항, 제36조의3제2항 · 제4항, 제37조제2항, 제38조제1항 전단 · 제2항, 제38조의2제2항, 제38조의3, 제38조의4제3항 · 제5항, 제38조의5 제1항 · 제2항, 제39조제1항 ·

제4항,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· 제3호,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· 제1호 · 제2호 · 제3항, 제41조제1항제4호 ·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· 제3항 후단 · 제8항 전단 · 제9항 전단, 제42조제1항 전단 · 제2항 · 제5항 전단 · 제9항 후단, 제42조의2제3항, 제43조제4항 · 제8항 · 제10항 후단, 제43조의2제4항, 제44조제1항 · 제3항, 제45조제1항, 제47조제1항 · 제3항, 제48조제1항 ·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· 제3항 · 제5항, 제49조제1항, 제49조의2제4항 · 제7항, 제50조제1항 · 제2항,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· 제6항 후단, 제51조의2제3항, 제52조의3제2항, 제52조의4제1항, 제52조의5제3호, 제61조제3호, 제62조제2항제3호 · 제3항, 제63조의2제2항, 제64조제1항 단서 ·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노동부령”을 각각 “고용노동부령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“노동부”를 각각 “고용노동부”로 한다.

제65조제1항 중 “지방노동관서”를 “지방고용노동관서”로 한다.

〈48〉부터 〈82〉까지 생략

제5조 생략